

2023. 9. 12.(화)
제2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
제 2 차 본 회 의

- 조례안 및 기타안건 -  
심 사 보 고 서



충 주 시 의 회  
(행정문화위원회)

# 차 례

## 【 조례안 및 기타안건 】 ☞ 원안가결 (4) 수정의결 (2)

<원안> 충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.....	2
<수정> 충주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.....	6
<원안> 충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.....	11
<수정>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.....	13
<원안>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.....	19
<원안>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.....	21

# 충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【 심사경과 】

가. 의안번호: 제3585호

나. 제 안 자: 김영석 의원

다. 제출일자: 2023년 08월 23일

라. 회부일자: 2023년 08월 23일

마. 상정일자: 2023년 09월 06일

바. 의결일자: 2023년 09월 06일

- 제2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

바. 의결결과: 원안가결

### 1] 제안설명 요지

-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 1,000명 미만의 공연 및 행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주최·주관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함.

### 2]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옥외행사의 적용범위, 시장 및 시민의 책무 등(안 제3조 ~ 제6조)
-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및 안전점검 실시(안 제7조 ~ 제8조)

- 안전관리 지원요청 및 재난예방 조치 등(안 제9조 ~ 제10조)
- 응급의료 지원요청 및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(안 제11조 ~ 제12조)

###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#### ○ 본 제정 조례안은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「공연법」에서 안전관리 또는 재해예방 조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1천명 미만이거나 주최·주관자 없이 순간 최대 5백명 이상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치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,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해야하며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4호너목 ‘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’은 지방자치사무로 명시되어 있는 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았을 때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다 할 것임.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며 이는 시민에게 추상적인 노력의무나 책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<sup>1)</sup> 안 제6조의 시민에게 포괄적 추상적 노력의무를 부과한 것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5조에 그 근거가 있으며 조례안에 권고사항만 있을뿐 별도의 벌칙 등의 조항은 존재하지 않아 법률 유보의 원칙<sup>2)</sup>에 위배 되지 않음.

1) 추상적인 노력의무나 책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해당 내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(대법원 2017. 12. 13. 2014추644)

2) 헌법 제37조, 지방자치법 제28조, 행정기본법 제8조

-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최우선 의 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이태원 참사 등의 사고 재발을 방지 하기 위해 법률에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각종 행사, 축제 등의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과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.

## [관련법령]

### 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 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~ ③ (생략)

제5조(국민의 책무)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,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·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)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66조의11(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~ ⑤ (생략)

## ■ 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④ 질의·답변 요지: 생략

⑤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⑥ 첨부서류: 없음

# 심 사 보 고 서

## 【 심사경과 】

가. 의안번호: 제3586호

나. 제 안 자: 정용학 의원

다. 제출일자: 2023년 08월 23일

라. 회부일자: 2023년 08월 23일

마. 상정일자: 2023년 09월 06일

바. 의결일자: 2023년 09월 06일

- 제2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

마. 의결결과: 수정의결

## 1] 제안설명 요지

- 행정안전부의 「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(안) 통보 및 제정 요청( '23.1.5. 배부)」에 따라, 현행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원계획 수립, 우선순위, 지원기준 등을 신설하고, 제명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## 2]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(안 제1조 ~ 제4조)
-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지원 대상 등(안 제6조 ~ 제7조)
- 설치규격 및 예산 편성(안 제8조 ~ 제9조)
- 지원기준 및 사후관리 등(안 제10조 ~ 제11조)
-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·운영 등(안 제12조 ~ 제13조)

### ③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#### ○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

- ‘22. 9. 경북 포항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인명피해 발생 및 기후상황 급변으로 자연재난 규모가 확대되는 등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 됨에 따라 행안부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제안된 것임.
- 충주시의 경우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해 북부 5개면 등 피해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지난달 또다시 집중호우로 인해 살미, 대소원, 달천 등 피해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.
- 또한 충주시 도심 내 상습침수구역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기관에서는 봉방·성내충인·문화·교현·용산동 일원에 약 900억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우수관로를 개선하고 배수펌프장 1개소를 신설하고 있음.
- 위와 같은 사례를 보았을 때 충주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제도를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### [관련법령]

#### 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~ ③ (생략)

④ 질의·답변 요지: 생략

⑤ 심사결과: 수정의결

⑥ 첨부서류

- 충주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.

## 충주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3586-1
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 : 2023. 9. 12.

제 출 자 :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- 공동주택의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 개소를 늘리고 지원금액을 증액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제10조제2항제2호 중 “개소 당 3백만원” 을 “설치개소 당 5백만원” 으로 함.

## 충주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충주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2호 중 “개소 당 3백만원”을 “설치개소 당 5백만원”으로 한다.

### 신·구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10조(지원기준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 략) 2. 공동주택: <u>개소 당 3백만원</u> 이하	제10조(지원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설치개소 당 5백만원</u> -----

# 심 사 보 고 서

## 【 심사경과 】

가. 의안번호: 제3587호

나. 제 안 자: 정용학 의원

다. 제출일자: 2023년 08월 23일

라. 회부일자: 2023년 08월 23일

마. 상정일자: 2023년 09월 06일

바. 의결일자: 2023년 09월 06일

- 제2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

마. 의결결과: 원안가결

## 1] 제안설명 요지

-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의 멋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, 올바른 한복착용 문화를 전통문화의 계승 ·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] 주요내용

-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시행계획(안 제5조)
- 한복입는 날 지정(안 제6조 )
- 한복 체험시설의 설치 · 운영(안 제7조)
- 육성 및 지원(안 제8조)
- 포상(안 제9조)

### ③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#### ○ 본 제정 조례안은

- 설날, 추석, 결혼식 등 정중한 행사나 기념일에 착용되고 있는 우리의 고유의상인 한복이 일상생활에서도 착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제안된 것임.
- 제정조례안에 시장이 한복 활성화를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과 한복입는 날 지정, 한복 체험시설의 설치·운영 등을 규정하여 전통 복식문화 침체 방지와 전통문화 계승 등 한복 생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### ④ 질의·답변 요지: 생략

### ⑤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## ⑥ 첨부서류: 없음

##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# 【 심사경과 】

가. 의안번호: 제3588호

나. 제안자: 신호일 의원

다. 제출일자: 2023년 08월 23일

라. 회부일자: 2023년 08월 23일

마. 상정일자: 2023년 09월 06일

바. 의결일자: 2023년 09월 06일

- 제2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

마. 의결결과: 수정의결

## 1] 제안설명 요지

- 충주시 관광진흥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범위의 모호성 해소
- 체험관광센터 내 부대시설(대회의실) 활용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다른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

## 2] 주요내용

- 제6조(지원제외) 3호 신설
  - 3. 관내 교육기관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
-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무지개 홀 추가

### ③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#### 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

- 충주시 관광진흥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지원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범위의 모호성 해소와 체험관광센터 내 대회의실 활용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된 것임.

#### ○ 주요내용으로는

- 안 제6조제3호에 관내 교육기관 행사 개최의 경우 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조제4호에 시내를 관내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의 모호성을 해소함.
- 별표2는 현재 게스트하우스로 변경되어 사라진 충주 체험관광센터, 무지개길 게스트하우스의 위치에 기재되어 있는 마리나센터를 삭제하였으며 중앙탑자전거, 반려동물 물품대여소의 마리나센터를 체험관광센터로 변경하고 무지개 홀(대회의실)의 위치와 내용을 신설 함.
- 별표3은 무지개 홀의 일반 사용료, 별표4는 대여 시간, 절기에 따른 무지개 홀 구체적인 사용료를 신설함.

#### ○ 종합의견

-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삭제된 시설명을 정비하고 지원사항과 규모를 명확히하여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해소 하였으며,
- 「관광진흥법」 제67조제2항에 따라 관광시설의 이용료를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.
- 다만, 개정조례의 제안이유인 모호성 해소를 위해 기존 조례 제4조제1항의3호의 ‘시내’를 개정조례안과 같이 ‘관내’로 수정할 것을 제시 드림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관광객 유치 지원) ① 충주 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관광사업자 등이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관광사업자가 국내·외 수학여행단체를 <u>시내</u>에 유치하여 숙박을 한 경우</p> <p>4.·5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관광객 유치 지원) ① 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/p> <p>----- <u>관내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4.·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## [관련법령]

### ■ 관광진흥법

제67조(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)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,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,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·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(생략)

④ 질의·답변 요지: 생략

⑤ 심사결과: 수정의결

⑥ 첨부서류

-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.

##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 안 번호	3588-1
-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 : 2023. 9. 12.

제 출 자 :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- 관광객 유치 지원 범위의 모호성을 해소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제4조제1항제3호 중 “**시내**” 를 “**관내**” 로 한다.

##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 중 “**시내**”를 “**관내**”로 한다.

### 신·구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관광객 유치 지원) ① 충주시 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관광사업자 등이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관광사업자가 국내·외 수학여행단체를 <u>시내</u>에 유치하여 숙박을 한 경우</p> <p>4.·5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관광객 유치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<u>관내</u>----- -----</p> <p>4.·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##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# 【심사경과】

- 가. 의안번호: 제3589호
- 나. 제 안 자: 충주시장(자치행정과장)
- 다. 제출일자: 2023년 08월 23일
- 라. 회부일자: 2023년 08월 23일
- 마. 상정일자: 2023년 09월 06일
- 바. 의결일자: 2023년 09월 06일
  - 제2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
- 마. 의결결과: 원안가결

### 1] 제안설명 요지

-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 등 지역여건의 변화로 인구와 세대수가 급증하거나 주민불편 지역의 행정통·반을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

### 2] 주요내용

- 전원주택단지 지역 ‘반’ 증설
  - 교현안림동 종민 제2통 4반 → 4반, 5반 (+1반)
- 공동주택 신축 등 인구 증가지역 통·반 증설
  - 호암 제3통 3반 → 제39통 1반, 2반 (+1통, +1반)
  - 호암 제일풍경채아파트(883세대) 통반 증설 (+2통, +10반)
- 중복 오류 기재된 통·반 표기 정정

- 연수 제85통 1~4반 및 제89통 1반 삭제
- 주민불편지역 통·반 구역조정
  - 목행 제8통 1~4반 → 1~3반으로 조정 (-1반)

### ③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#### 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

-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5항에 따라 호암동 공동주택 신축 등의 지역 여건 변화와 주민불편지역의 행정동·통·반 증설, 분할 등을 조정함으로써 주민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 ④ 질의·답변 요지: 생략

### ⑤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## ⑥ 첨부서류: 없음

##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# 【심사경과】

- 가. 의안번호: 제3596호
- 나. 제 안 자: 충주시장(회계과장)
- 다. 제출일자: 2023년 08월 23일
- 라. 회부일자: 2023년 08월 23일
- 마. 상정일자: 2023년 09월 06일
- 바. 의결일자: 2023년 09월 06일
  - 제2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
- 바. 의결결과: 원안가결

## 1 제안설명 요지

-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 등을 위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변경에 대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의2,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「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함.

## 2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

### ① 장자늪 카누체험장 조성부지 매입

#### 1 사업개요

- 사업목적
  - 카누탐승지 주변 단무지절임밭(소금물 하천방류)을 매입하여 장자늪

의 환경 및 경관적 가치 보존

- 단무지절임밭을 카누 체험객이 이용할 수 있는 카누체험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제고

○ 위 치: 중앙탑면 장천리 791-5 일원

○ 내 용

- 카누체험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(주차장 및 부대시설)

○ 사업기간: 2023. 9. ~ 12.

○ 사 업 비: 120백만원

## 2 관리계획 대상

○ 토지 취득 (매입)

(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)

재산의 표시				소유자	재산가액 (공시지가기준)	회계구분
소재지	지 번	지 목	면 적			
중앙탑면 장천리	791-5	전	2,043	홍재학	51,687	일반회계

## 3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장자늪 카누체험장 조성부지 매입 건은 장자늪 체험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출발지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됨.
- 장자늪 카누체험장은 2023년 「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사업」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총주의 레저관광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.
- 장자늪 카누체험장의 원활한 운영과 관광객 유치 및 편의제공을 위해 부지 매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됨.

- 다만, 해당부지는 하천(한강)구역으로 해당부지 내 토지형질변경(주차장 조성), 공작물 설치(부대시설 설치)는 「하천법」 제3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(원주청) 권한으로 점용허가 협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진행상황을 청취할 필요가 있으며
- ‘2017년 차량침수사고를 겪어 6년간 폐쇄한 증평군 보강천 하상주차장의 사례를 보았을 때 하상주차장의 경우 집중호우 시 침수의 우려가 있어 침수에 대한 안전 대책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 됨.

## ② 가칭 청소년회관 건립(변경)

### 1 사업개요

- 위 치: 충주시 호암동 1237번지
- 사업목적
  - 아동·청소년들의 재능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체험·문화·교육공간을 조성하여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
- 규 모: 건축 연면적 1,349㎡ / 지상 4층
- 사업내용
  - 청소년 아지트(카페, 노래방, 댄스실), 스마트체육관(인바디)
  - 청소년 스튜디오(크리에이터), 동아리실, 체험·교육 프로그램실
- 사업기간: 2022년 ~ 2025년
- 사 업 비: 7,200백만원 (시비)

(단위 : ㎡, 백만원)

재 원	총사업비	2022년	2023년	2024년 이후	회계구분
시 비	7,200	1,200	20	5,980	일반회계

○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산 출 기 초	금 액
합 계		72
공사비	1,349㎡ × 4,151천원/㎡	56
용역비	설계비, 인증비, 감리비 등	4
토지매입	1,708㎡ × 716,000원/㎡	12

○ 주요 변경내역

구 분	당 초	변 경
위 치	충주시 호암동 1237	변동사항 없음
사업기간	2022. 9. ~ 12.	2022년 ~ 2025년
사업비	1,200백만원(시비)	7,200백만원(시비)
사업규모	토지 1,708㎡	토지 1,708㎡, 건축물 1,349㎡(지상4층)
사업내용	부지매입(토지)	부지 매입(토지) & 건물 신축

**2** 관리계획 대상 (토지 2천㎡ 이상 처분)

○ 건물 취득(신축)

(단위 : ㎡, 백만원)

구 분	소재지	지번	소유자	구 조	연면적	사 업 비	회계구분
신 축	호암동	1237	충주시	철근콘크리트	1,349	6,000	일반회계

**3**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본 사업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·문화·교육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호암동 1237번지에 **가칭** 청소년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제안된

것으로

- 제265회 임시회 시 청소년 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토지 매입과 건축물 건립을 최초 의결 받았으며 제267회 임시회에서는 ‘대상부지 용도변경 장기간 소요<sup>3)</sup>에 따라 착공시점 건축비 상승과 토지 매입을 이유로’ 건축물 부분을 제외하고 토지매입 부분에 대하여 변경 의결을 받은 이력이 있음.
- 택지개발 등으로 다수의 공통주택이 위치한 호암·직동·용산동에는 충주시 청소년의 25.4%<sup>4)</sup>가 거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청소년 교육 및 여가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청소년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.

구 분	최초 의결(265회)	1차 변경(267회)	2차 변경(277회)
위 치	충주시 호암동 1237	충주시 호암동 1237	변동사항 없음
사업기간	2022년 ~ 2025년	2022. 9. ~ 12.	<b>2022년 ~ 2025년</b>
사 업 비	6,200백만원(시비)	1,200백만원(시비)	<b>7,200백만원(시비)</b>
사업규모	토지 1,708㎡, 건축물 1,349㎡(지상4층)	토지 1,708㎡	토지 1,708㎡, <b>건축물 1,349㎡(지상4층)</b>
사업내용	부지 매입(토지), 건물 신축	부지매입(토지)	부지 매입(토지), <b>건물 신축</b>

3) 대상부지는 국토계획법 상 업무용지로 수련시설 건립이 불가하여 도시계획시설(수련시설) 결정 행정절차 진행 중  
4) 9세~19세 2023. 7.기준(4,966명/19,518명),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은 9세~24세,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은 만19세 미만

### ③ 군사시설 부지 시유재산 매각

#### 1 사업개요

- 위 치: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 산15-5 외 2필지
- 매각사유
  - 국방·군사시설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요청에 따라 사업부지 내 시유재산을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에 매각하고자 함
- 위 치 :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 산15-5 외 2필지
- 매각면적 : 2,579㎡
- 토지현황 : 군사시설 부지(국방부 소유) 내 맹지형태로 위치
  - ※ 토지이용계획상 제한보호구역(폭발물 관련 : 1km) 내 위치
- 사업시행자 :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(국방부 산하기관)

#### 2 관리계획 대상 (토지 2천㎡ 이상 처분)

- 토지 처분 (매각) (단위 : ㎡, 천원)

재산의 표시				소유자	재 산 가 액 (공시지가기준)	회계구분
소재지	지 번	지 목	면적(㎡)			
합 계	3필지		2,579		6,984	
신니면 마수리	산15-5	임야	1,061	충주시	2,355	일반회계
	산15-28	임야	1,273	〃	3,882	〃
	산15-29	임야	245	〃	747	〃

#### 3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본 안건은 국방·군사시설사업 내 위치한 신니면 마수리 산15-5번지 외 2필지를 국방부 요청에 따라 매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
- 신니면 마수리 산15-5번지 외 2필지는 2023년 제5차

공유재산심의회(회계과)에서 용도폐지되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되었으며 일반재산의 경우 「공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8조제1항에 따라 국가(국방부)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수의매각이 가능함.

- 현재 매각필지는 7탄약창 내 편입되어 있어 사실상 군사시설로 점유되고 있는 상태로 재산관리에 대한 행정력 낭비 방지와 세입 증가 등을 위해 해당필지를 매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③ 질의·답변 요지: 생략

④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⑤ 첨부서류: 없음